

무선설비형식검정과 전자파장해검정제도의 변화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단행된 전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무선설비형식검정제도와 전자파장해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을 5월 8일 개정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의 해설이다.

강 덕 근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감리과장

제도개선 취지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단행된 전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무선설비형식검정제도와 전자파장해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규칙(정보통신부령)을 5월 8일 개정·공포하였다.

이는 '95년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그동안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 오던 검정제도를 민간기관에 위임하여 민간시험기관을 활성화하고 국내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제조업체 스스로가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부는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96.12.30 전파법을 개정하여 등록제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선설비형식검정및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을 “무선설비형식검정·형식등록및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으로,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전자파적합등록규칙”으로 제명을 바꾸고 세부적인 등록방법과 절차 등을 급변에 마련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그 주요개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무선설비형식검정제도

무선기기의 성능과 규격을 시험·검정하여 국내 생산기기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전파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전자파장해검정제도

전기·전자 및 정보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인체 및 주변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주요 개정내용

[무선설비형식검정·형식등록및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검정 및 등록절차(규칙 제3조)

현행 무선설비의 형식검정제도를 형식검정과 형식등록으로 구분하고, 무선설비 형식검정(이하 “형식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제작자 및 수입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전과 같이 형식검정을 받고자 하는 기기와 형식검정신청서에 당해기기의 취급설명서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의 처리기한은 30일이다. 이러한 형식검정 방법 및 절차는 종전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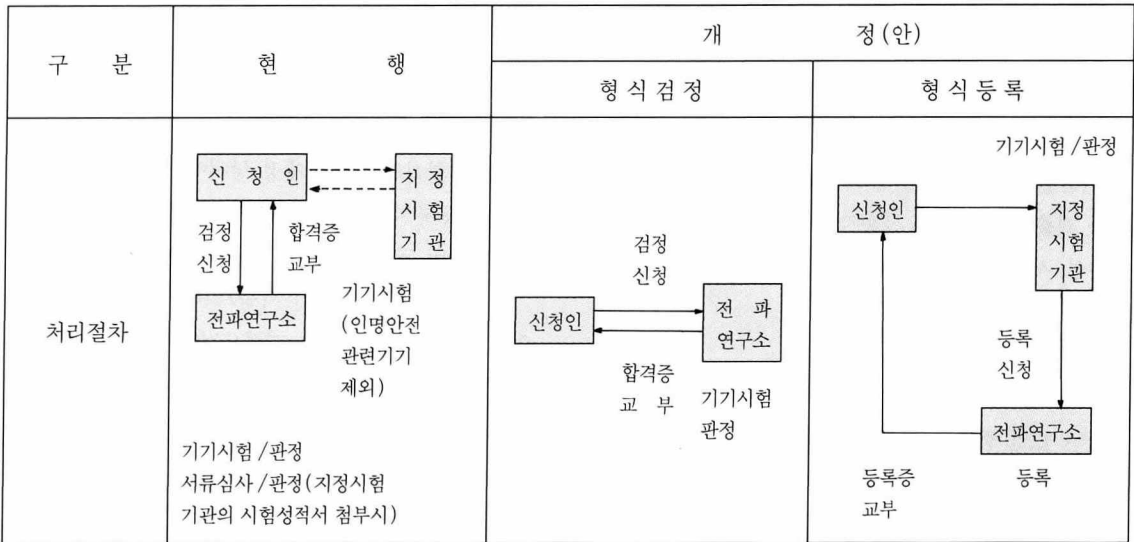
그러나 무선설비형식등록(이하 “형식등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형식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기와 형식등록신청서에 당해기기의 취급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장이 지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25일 이내에 기기시험을 완료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기기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장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형식검정 대상기기는 소장이,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민간시험기관의 장이 시험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형식등록의 경우 종전과는 달리 신청인이 소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시험기관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게 되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기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을 통해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소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이 확대되는 시기인 '97.6.30 까지는 잠정적으로 소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무선설비형식검정 · 형식등록의 절차 및 방법



대상기기 구분 (규칙 제2조)

현행 형식검정대상기期中 선박국용 무선방위측정기,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무선전신기기 등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 17종은 현재와 같이 형식검정 대상기기로 하여 전파연구소가 직접 시험하고, 국민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간이무선국 등의 무선기기 17종은 민간지정시험기관이 시험하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로 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검정 및 등록 대상기기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무선국 허가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전검사로 갈음되는 기술기준확인증명(이하 “확인증명”이라 한다) 제도의 확인증명 대상기기는 현재의 이동국, 간이무선국, 아마추어용 휴대형 무선기기 등 8개 품목에서 개인휴대전화(PCS)와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중 가입자용 무선기기는 추가하고,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는 삭제하였다. 다만, 확인증명 대상기기중 이동가입무선전화용 가입자 기기(이동전화)는 확인 증명 수수료를 11,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98.6.30까지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주문자명의 신청 (규칙 제3조)

종전규칙에 의해서는 신청자가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규칙에서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하여 생산된 기기를 주문자명의로도 형식검정·형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 경우 판매자가 곧 형식검정 합격자 또는 형식등록자가 됨에 따라 신청절차가 간편해지고 품질보증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므로 편리해졌다.

수입기기는 “한글본” 제출 (규칙 제3조제2항)

수입기기에 대한 형식검정·형식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인 취급설명서의 한글번역문을 한글본(책자)으로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기기판매시 한글번역문이 사용자에게 배포되지 않아 불편하였으나 제출된 한글본을 사용자에게 배포토록 하여 기기특성, 사용방법 등을 사용자가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규칙 제4장)

작년 12월 전파법 개정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조항(법 제67조의3)을 신설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또는 등록을 하거나, 제품이 기준에 미달한 때 또는 허위로 합격 및 등록표시를 한 경우에는 검정 및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동종의 기기에 대하여는 신청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이와 아울러 기기의 명칭, 검정 및 등록번호, 일련번호, 제작사명, 합격 및 등록자 등의 표기는 반드시 합격 또는 등록표장안에 인쇄하도록 하였으며, 일련번호를 넘버링으로 찍거나 별도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하였다.

사후관리 강화 (규칙 제5장)

정부는 등록제 전환에 따른 제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합격 또는 등록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공무원이 직접 제조·수입 또는 유통중인 기기를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시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량제품이 발견될 때에는 시정조치, 생산중지, 등록취소 등을 통해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사후관리의 방법, 절차 등은 그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미리소장이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또한 합격 또는 등록기기에 대해서는 합격자 또는 등록자가 자체 측정설비를 구비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보증업무(종전의 성능유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기기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수수료 인상 (규칙 제6장)

'78년 형식검정규칙 제정 당시에 정했던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수수료를 20여년 동안의 인건비 및 시설감가상각비 등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현실화 했다.

또한 종전에는 소장이 시험기관을 지정할 때 지정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나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 및 현지확인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하여 지정수수료(778,600원)를 신설하였으며, 동일기기확인증명 및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도 신설하였다. 다만, 기기시험이 생략된 경우 종전규칙에서는 수수료의 3/5를 받았으나, 개정규칙에서는 1/5로 인하하였다.

지정시험기관 (규칙 제8장)

형식등록 대상기기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이 종전에는 무선기기형식검정지정시험기관의 지정요건등에 관한 규정(체신부고시 제1994-42호)에 의하여 모든 등록기기를 시험할 수 있는 일반지정시험기관과 자사제품만 시험할 수 있는 자체지정시험기관으로 구분하여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전파

진흥협회,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기관 등만이 일반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지정시험기관 지정요건을 개정규칙에 수용하였다.

개정규칙 제35조에 의하면 일정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시험원과 등록기기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어느 기관이라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자체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삼성전자, (주)현대전자, LG정보통신(주) 등 3개사는 '97.6월말까지 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시험원 및 시험설비를 갖추어 지정시험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3개사가 재지정을 받게되면 현재 일반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SK텔레콤을 비롯하여 4개사로 확대되게 되며, 한국통신,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의 기관에서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므로 형식등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은 가까운 지정시험기관에 가서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중전규칙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SK텔레콤은 이 규칙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보며, 지정갱신의 기산시기는 중전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날로 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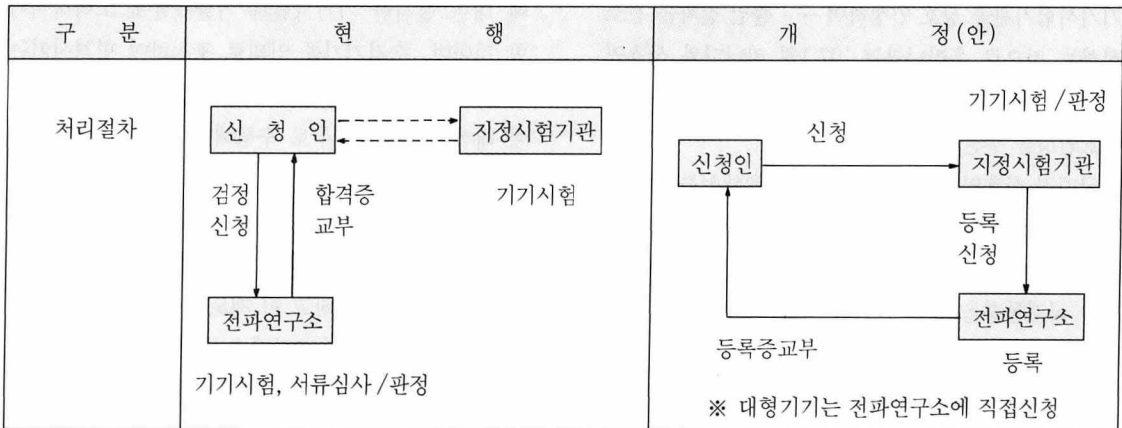
[전자파적합등록규칙]

대상기기 (규칙 제5조)
적합등록 대상기기는 종전과 같다.

등록절차 (규칙 제6조)

전자파적합등록의 절차 및 방법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형식등록 절차 및 방법과 같다.

<표 3> 전자파적합등록의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 주문자명의 신청 및 한글본 제출
사후관리의 방법·절차 및 주문자명의(OEM) 신청과 수입기기 한글본 제출은 형식검정·형식등록 제도와 같다.

같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하며, 지정시험기관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3년으로 하였다.

지정시험기관 (규칙 제4장)

적합등록의 지정시험기관은 <표 4>에서 보는바와

수수료 조정 (규칙 제30조)

적합등록 수수료는 종전과 같으나, 적합등록 수수료의 80%로 정했던 내성시험수료를 방사내성과 그

이외의 분야로 구분하여, 방사내성은 적합등록 수수료로 하고 방사내성 이외의 분야는 등록수수료의 40%로 정했다.

적합등록의 취소 (규칙 제 5장)

적합등록의 취소요건 및 제한사항은 형식검정·형식등록의 취소요건 및 제한사항과 같다. 다만, 규칙 제24조에 의한 품질보증업무 및 시정명령의 불이행, 조사·확인 거부·방해, 지방세법 제169조에 의한 시도지사의 면허 취소요구시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의 과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통신기기의 형식검정, 형식승인 및 전자파적합등록의 상호인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호인정 제도는 양국의 제도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원칙하에 기기시험기관을 상호 인정하여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97.1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미국, 호주 등과의 상호인정을 추진중에 있다.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으로 항상 현행화 할 수 있도록 국제동향을 살펴야 하며 관련기술 개발에도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 소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전자파관련 업무도 우리부가 '96.10.9 제·개정

한 통일된 EMI /EMS기준과 시행시기('97.7.1부터 2001.1.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에 맞추어 관련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맺는말

지난 5월 8일 개정 공포된 무선설비형식검정·형식등록및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과 전자파적합등록규칙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가 관장해 오던 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등록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다소 짧아지는 등의 잇점이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민간지정시험기관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전파연구소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며, 지정시험기관은 등록제도의 전환에 따라 등록기기에 대한 서류심사 및 합격여부 판정 등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반면, 수검기기에 대한 철저한 기기시험과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수검기기를 임의로 조정하여 합격시키는 행위 등을 지향하고, 등록자가 요청할 경우 등록기기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도 수행해야 하는 등 많은 책임도 부여 받게 되었다.

따라서 전파연구소, 지정시험기관 및 기기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모두는 불량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술개발에 노력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제품을 생산·보급할 때 등록제도가 아닌 신고제도의 전환도 검토될 것이다.

〈표 2〉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대상기기

형식검정 대상기기(인명안전 관련기기)	형식등록 대상기기
1. 선박에 시설하는 경보자동수신기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에 비치하는 주파수 측정장치
2.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2. 무선설비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형식검정 대상기기(인명안전 관련기기)	형식등록 대상기기
<p>3. 선박국용 무선방위측정기</p> <p>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항공기국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기기</p> <p>5. 경보자동전화장치</p> <p>6.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p> <p>7. 28MHz이하의 주파수대에서 단측파대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로서 해상이동 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p> <p>8. 27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p> <p>9.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더 및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레이더푸팅장치</p> <p>10.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양방향 무선전화장치</p> <p>11.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p> <p>12. 현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p> <p>13.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해상이동 업무 무선국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이하 “해상이동 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라 한다)의 기기</p> <p>14. 디지털선택호출전용 수신기</p> <p>15. 네비텍스수신기</p> <p>16. 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의 기기</p> <p>17.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p> <p>18.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p>	<p>3. 무선호출국의 무선설비의 기기</p> <p>4. 28MHz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용 기기를 제외한다)</p> <p>5.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의 기기</p> <p>6. 라디오부이의 기기</p> <p>7.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양방향무선전화장치를 제외한다)</p> <p>8.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주파이용설비중 의료용 설비의 기기</p> <p>9.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p> <p>10.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p> <p>11. 1,800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의 기기(개인 휴대통신용 무선설비)</p> <p>12. 900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발신전용휴대 무선전화장치)</p> <p>13. 900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터 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p> <p>14.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p> <p>15.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p> <p>16.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p> <p>17. 전파법시행령 제56조의2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선설비의 기기</p> <p>18.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p>

〈 표 4 〉 전자파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지정현황

지정일자	지 정 시 험 기 관 명	소 재 지
'91. 2. 1	삼성전자(주) 제1지정시험기관	수원
"	삼성전자(주) 제2지정시험기관	용인
"	삼성전자(주) 제1지정시험기관	수원
'91. 3. 13	엘지전자(주)	서울문래
'91. 4. 3	삼성전관(주)	울산
'91. 10. 29	IBM RESEARCH TRIANGLE PARK EMC LAB	미국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92. 2. 22	대우전자파측정시험소	용인
'92. 4. 14	(주)삼보컴퓨터	안산
"	한국 도건 EMC 엔지니어링(주)	남양주
'92. 7. 30	IBM AUSTIN EMC LAB	미국
"	IBM ENDICOTT EMC LAB	미국
"	IBM MID-HUDSON EMC LAB	미국
'92. 8. 20	(재)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흥
'92. 8. 25	(주)국제 이.엠.씨	여주
'93. 1. 21	현대 EMI 시험소	안산
'93. 2. 24	(주)해동 EMC	화성
'93. 3. 28	제일 EMC 연구소	이천
'93. 4. 10	LG정보통신(주)	구미
'93. 8. 28	두루통상	화성
"	엘지전자(주) EMC연구소	구미
"	서울전자시험연구소	여주
'93. 9. 31	엘지전자(주) EMC연구소	구미
'93. 11. 18	(주)동안전자	용인
'93. 11. 25	(주)한국전파시험기술연구소	여주
'93. 12. 27	생산기술연구원	서울구로
'94. 5. 3	생산기술연구원	화성
'94. 6. 28	현대전자산업(주)	이천
"	만도기계(주)	용인
'94. 8. 10	삼성전관(주)	울산
"	한국 EMC 연구소	용인
'95. 4. 4	(주)한국기술연구소	경기광주
'95. 7. 1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
'95. 12. 1	(주)원택	경기광주
'96. 11. 1	한국노이즈연구소	용인